

# 공사계획서

층·호수	층	호	입주사 상호
공사 기간			
주요 공사내용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귀사의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1. 관련법규 준수 및 **보안실의 통제를 무조건 수용함 (동선, 시간, 민원)**
2.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신속한 해결조치
3. 공사중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
4. 공사중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임차매장의 경우 퇴점시 원상복구)
5. 착공전 공사계획서와 도면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후 공사실시
6. 공사로 인한 폐기물은 공사업체에서 모두 수거
7. 사전에 협의된 내용 외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중단 조치
8. 시설물 보양
  - ① 복도바닥 : 골판지 보양
  - ② 비닐보양 : 천정형 냉난방기, 감지기, 디퓨저
  - ③ 작업장 먼지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출입문 비닐보양
9. 공사협의를서 작성내용

년      월      일

입주사대표 : _____ (인)	공사업체명 : _____
연락처 : _____	현장책임자 : _____ (인)
	연락처 : _____

(주) 가든파이브틀 귀중

협의부서	기계 2047-6070	전기 2047-6050	방재 2047-6060	건축 2047-6080
확 인				

## 공사수칙 준수각서

가든파이브틀 건물 내에서 시설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입점자 시행분)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원상복구 및 시설물 파손시 복구비용 부담 등 주식회사 가든파이브틀의 조치를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1. 미관과 통일성유지, 시설보호, 유해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가든파이브틀 건물에서 정하는 기준·지침을 준수하여 감독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하도급자 포함)의 고의·과실로 인한 인적·물적·화재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입점자(하도급자 포함)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3. 공사착공 전 공사계획서와 도면을 제출·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며 승인조건과 일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4. 기존 천정, 바닥, 벽체의 변경과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기 시설물을 파손 시 변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및 동선에 면한 시설물 보양은 아래와 같이한다.

가	복도바닥	비닐을 테이핑한 후 골판지를 한다.
나	벽체	골판지를 부착한다.
다	E/L 내부	벽체 및 바닥에 골판지를 부착한다.
라	E/L 전실	벽체 및 바닥에 골판지를 부착한다.
마	천정	비닐을 부착한다.
바	F.CU 커버	비닐을 부착한다.
사	기타	도장공사에 면한 모든 시설물에 비닐로 보양한다.

### 6. 작업장 출입조건

작업자 전원은 가든파이브틀 건물관리 관련부서(시설운영팀, 시설지원팀 등) 및 보안실에서 출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사자재 반입 및 반출시 사전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E/L는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7. 안전 및 정숙관리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용접시엔 용접 불뚱 비산낙하망을 설치, 주변엔 불연재로 보양하며 소화기를 비치한다.
  - 나. 위험물을 사용할 때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 다.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와 함께 방재과로 신고하고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공사시 지정된 동선사용 및 보행에 정숙을 기하여야 한다.
  - 마. 비품 및 시설물 파손방지를 위하여 담당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바. 모든 작업은 가든파이브틀 영업시간 내에는 시행할 수 없다. 단, 영업관리팀과 사전 협의된 사항은 진행할 수 있으나, 소음·분진·용접·페인트작업 등 타매장에 영업을 방해 및 민원발생할 때는 작업을 즉시 중단한다.
8. 모든 공사 및 작업은 필히 공사착수 전에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진행을 하여야 한다.
9. 매장 내 시설공사는 퇴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10. 매장 내 반입되는 모든 설치물(내장재 · 진열집기 · 식물류 등)은 필히 방염 처리토록 방재과 사전협의 해야 하며, 위반시는 반입을 불허한다.
11. 모든 시설물은 파손불가(파손시 변상 및 원상복구)하며 특히 방화셔터, 제연커튼, 배전함 등은 이전 · 이설이 불가하고, 어떠한 시설도 설치 및 부착할 수 없다.
12. 간판설치(내·외부)와 관련한 사항은 당사 영업관리팀과 필히 사전협의 완료 후 설치토록 한다.
13.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공사로 인한 각종 폐기물 및 기타 자재는 공사업체에서 모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      년      월      일

층

호

공사업체명 :

각서인

책임자성명 :

(인)

**주식회사 가든파이브틀 귀중**

## 공 사 협 의 서

공 종	공 사 승 인 조 건
기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정속의 원격 검침선이 공사중 단선되지 않게 한다</li> <li>- 천정형 FCU를 이설할 경우 드레인에 지장이 없게 하고, 통신선이 단선되지 않도록 한다</li> <li>- <b>전기 판넬 내부 FCU 차단기를 내리면 펌프작동이 안되어, 누수가 발생하므로 FCU 차단기는 내리지 않는다.</b></li> <li>- 주방 배기후드 설치시, 음식냄새가 타 점포로 퍼지지 않게 시공한다</li> <li>- 배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li> <li>- 위생배관 시공시 하부층으로 누수가 안되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li> <li>- 도시가스공사 전에 가스 안전관리자와 협의한다</li> <li>- 냉난방설비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냉난방 불량, 누수,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시공업체에서 책임진다</li> </ul>
전기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기 설계용량 이상의 전기사용은 불가</b></li> <li>- <b>분전반 내부 작업시 활선 작업을 금하며</b> 판넬 변경시 동일 재질, 사양, 제품을 사용한다</li> <li>- 전선(케이블)은 석면선, FR-8, HIV, CV전선 중에서 사용하고, 4m<sup>2</sup>이상 이어야한다. (비닐 전선류 사용 불가)</li> <li>- 전선접속은 압착단자, 단자대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하고 와이어콘넥터로 작업후 절연테이프로 마무리 한다.(압착식 사용 불가)</li> <li>- 배관시 아연도금 스틸 파이프, 고장력코푸렉스 후렉시블 및 몰드(리빙덕트)를사용한다.</li> <li>- 등기구 및 간판(집기류)에는 별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li> </ul>
방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건물은 복도가압 / 매장배기의 제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b>칸막이 구획시 반드시 하부급기/상부배기 방식</b>으로 시공한다 (하부 급기그릴을 설치, 상부 배기그릴 또는 제연배기 덕트를 설치)</li> <li>- 수계 소화설비(S/P) 철거 후 NAFS-Ⅲ, CO2, HALON설비를 설치시에는 퇴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방재실 프로그램 수정시 비용은 시공자 부담)</li> <li>- 칸막이 구획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헤드를 증설 또는 이설한다</li> </ul>

방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칸막이로 구획된 실은 <b>아나로그 감지기 설치 및 프로그램수정</b>을 하여야한다 (단, NAFS-Ⅲ, HALON, 프리액션 밸브 : 교차회로 방식 시공)</li> <li>- 각 실의 출구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 (피난구 유도표지로 대체 가능) (각 실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상일 경우 추가 설치)</li> <li>-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집기(커튼, 카페트 포함)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방염작업 확인서 및 소방검정공사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원본제출)</li> <li>- 5~10일 이상을 작업하는 LAY-OUT 변경 공사시 외부에 가설로 설치되는 칸막이는 준불연재인 석고보드 또는 철재 칸막이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 각 소방시설물 증설·이설, 전·후 방재과에 즉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li> <li>- 각 실의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물 증설·이설 시 공사도면, 공사계획서를 첨부한다</li> <li>- 작업장 내에서는 금연하며, 분진 발생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기에 유의한다</li> <li>- 공사장 내부에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한다</li> <li>- 공사완료 시 출력도면, CAD 파일, 방염관련 서류를 제출한다</li> <li>- 구획된 각 거실의 면적이 33㎡ 이상일 경우에는 3.3kg 분말소화기를 1개이상 한다.</li> </ul>
건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칸막이 자재는 ST'L 칸막이(불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DRY WALL 공사는 철재 STUD+GLASS WOOL+석고보드 2PY사용)</li> <li>- <b>철거작업 및 소음, 분진발생 작업, 도장 작업은 야간(20시 이후)에 실시한다.</b></li> <li>- 기존 기둥, ST'L 칸막이에 시트지를 부착할 수 없다</li> <li>- 천정 석고보드 작업시 점검구를 설치한다</li> <li>- 벽체 도장은 수성페인트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li> <li>- 자기질, 석재타일(대리석 포함)작업 불가</li> <li>- MAIN KEY는 당 건물 MASTER KEY SYSTEM에 따라야 한다</li> <li>- 용접작업 시 반드시 용접불티 방지용 그라스포를 사용한다</li> <li>- 용접기는 전격 방지기 부착 또는 일체형을 사용할 것</li> </ul>

# 인테리어공사 안내 확인서

인테리어 공사 호실 :

호

번 이	호실명	상 호 명	공 사 안 내 사 항	확인자	서명
1					
2					
3					
4					
5					

\* 인테리어 공사내용을 인접사무실에 충분히 설명 후 공사담당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